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립박물관·미술관 인력·시설의 범위 규정〉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32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립박물관·미술관 인력·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12조제2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4. 20.
3. 회 부 일 : 2026.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으로 94곳에 달해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책임을 갖는 박물관·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항).

III. 검토의견

1. 국립박물관·미술관 인력·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안 제12조제2항)

개정안은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u>사항은</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학예사 등 인</u> <u>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u>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3조¹⁾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박물관·미술관, 국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박물관 · 미술관 운영 주체별 현황 >

운영주체	박물관· 미술관 수	전 체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연 관람인원
국립박물관	58	3,777	1,205	5,415,653	21,871,524
국립미술관	1	773	161	11,819	2,947,454
공립박물관	385	4,621	1,354	3,084,082	33,230,609
공립미술관	80	1,297	499	128,176	7,626,237
사립박물관	369	2,741	861	4,711,233	21,247,700
사립미술관	194	1,229	585	109,204	6,176,827
대학박물관	106	652	336	2,368,449	949,607
대학미술관	15	68	31	5,940	214,808
총 계	918	11,791	3,756	15,579,417	77,299,440
총 계	290	3,367	1,276	255,139	16,965,326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현행법 제12조²⁾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부터 개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³⁾

현행법 시행령은 등록시 필요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을 박물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⁴⁾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학예사 1명 이상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 94곳에 달하여⁵⁾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참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

5)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p.259.~940.

이에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등록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갖추어야 하는 학예사 등 인력, 조직과 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기획 운영 등 일련의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폭넓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 제28조⁶⁾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등록된 박물관이 이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박물관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9조⁷⁾는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9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시 필요한 학예사 등 인력과 시설 요건을 운영 과정에서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력과 시설 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박물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할 경우, 박물관·미술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에

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로 관람료·휴관일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자체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등록은 의무이며, 등록요건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 등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기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 4) 자료의 희소성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미 술 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 물 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 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 물 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 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 족 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 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